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

(기관명: 부산지방노동위원회)

2019. 4.

고 용 노 동 부
감 사 관 실

Ⅰ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대상기관: 부산지방노동위원회

2. 감사범위: ’16. 2. 20. 이후 노동위원회 업무 전반

3. 감사기간 및 인원

○ 기 간: ’19. 3. 11. ~ 3. 15.(5일간)

○ 인 원: 감사담당관 외 3명

4. 감사중점 사항

〔일반관리 분야〕

○ 회의수당 등 예산집행의 적정여부

○ 위원회 구성, 사건배정의 적정여부

〔조정분야〕

○ 노동쟁의 조정업무 처리 적정여부

○ 중점지원대상 사업장 노사분쟁 예방지원 활동 적정여부

〔심판·차별시정·복수노조분야〕

○ 심판업무 처리 적정여부

○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, 이행강제금 부과업무의 적정여부

○ 구제명령 확정 사업장 고발관련 업무 적정여부

Ⅱ. 감사대상 현황

○ **(행정대상)** 관할 지역은 **부산시(15개구, 1개군)**로 **사업장 136,782개소** (전국의 7.0%), **노동자 1,137,716명**(전국의 6.5%)

○ **(조정업무)** '18년 처리한 조정사건 73건 중 **38건이 조정성립(성립률 58.5%)***되어, 전국평균(49%) 보다 높음

* '16년 30건/64건(61.2%)→ '17년 21건/60건(43.8%)→ '18년 38건/73건(58.5%)

○ **(심판업무)** '18년 접수된 심판사건 **646**건(이월 78건 포함) 중 **558건 처리(처리율 86.4%)**

* (처리실적) '15년 950건 → '16년 802건 → '17년 616건 → '18년 558건

- **인정률(16.5%)**은 전국 평균(13.1%)보다 높고, **화해·취하율(64.9%)**도 전국평균(63%)보다 높음

* (총 558건) 인정 92건(16.5%), 기각 75건(13.4%), 각하 29건(5.2%), 화해·취하 362건(64.9%)

○ **(차별시정업무)** '18년 **4건 처리**(조정성립 1건, 취하 3건)

* '16년 7건(일부시정 2건, 기각 2건, 취하 3건), '17년 2건(전부시정 1건, 취하 1건)

○ **(복수노조업무)** '18년 **16건 처리**(인정 1건, 기각 4건, 취하 11건)하였으며, '17년 다수 건설노조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 신청 및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이 많아 처리 건수 대폭 증가

* '16년 8건 → '17년 94건 → '18년 16건

○ **(직원현황)** 정원 21명/**현원 19명**(충원률 90.4%)

○ **(기관평가)** **'18년 A등급**으로 12개 위원회 중 **4위**('17년 11위), 고객만족도 5위

Ⅲ. 감사결과

1. 총 평

○ 기관운영분야는 복무·출장관리 및 체납처분 업무 등이 다소 미흡

○ 조정분야는 조정사건 종료 결과 지방노동관서 통보,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 호선 내역 누락 등이 미흡

○ 심판분야는 판정서 송부 및 처리결과 지방관서 통지, 이행강제금 부과, 구제명령 확정 사업장 고발 관련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

2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: 건, 명, 천원)

합 계			변상 (인원)	징계 (인원)	시정(금액 등)			경고·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고발 (인원)	모범사례 (인원)
총 건수	신분상 조치 인원	재정상 조치 금액			소계	회수·추급	기타						
8	5	-	-	-	-	-	5	3 (5)	-	-	-	-	-

3. 분야별 지적사항

1 공무원 근무(유연근무제) 사항 부적정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 유연근무제**를 이용하면서 복무관리시스템에 **출·퇴근 시간 미등록**(8명)

○ **(조치사항)** 전 직원에 대해 복무관리 **교육 실시** 후 보고

2 정부구매카드 사용 부적정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** 정부구매카드 사용 시 카드 영수증에 사용자의 서명 누락 및 금액 50만원 이상 사용 시 참석자 명단 미첨부

○ **(조치사항)**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대한 **교육 실시** 후 보고

3 체납처분 업무 소홀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** 소멸시효가 만료된 이행강제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결손처분 등 미실시(3건)

○ **(조치사항)** 해당 건에 대하여 **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**

4 특근매식비 지급대상 산정 부적정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** 업무추진비로 식사 등이 제공된 직원에 대해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으로 중복 산정(8건)

○ **(조치사항)** 특근매식비 지급대상 산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**교육실시** 후 보고

5 노동쟁의 조정사건 업무처리 소홀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조정결과를 지방노동관서 미통보, 회의록 작성 시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 호선 내역 누락하는 등 업무처리 소홀(29건)

○ **(조치사항) 3건 이상** 소홀히 한 ㅇㅇㅇ 등 **3명 '주의'**

6 심판사건 업무처리 소홀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심판사건 종결 후 판정서를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지연 처리(4건), 사건처리결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미통보(13건)

○ **(조치사항) 3건 이상** 소홀히 한 ㅇㅇㅇ **'주의'**

7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구제명령 이행여부 32~39일 경과하여 확인(3건),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 5~9일 소집 지연(8건), 법정 하한액(정직 250만원)보다 미달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(2건)

○ **(조치사항) 3건 이상** 소홀히 한 ㅇㅇㅇ **'주의'**

⑧ 구제명령 확정 사업장 고발 관련업무 소홀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** 구제명령이 확정된 사업장(8개소)에 대해 이행촉구 및 고발예정일 통지를 짧게는 13일, 길게는 213일을 지연하여 통지하는 등 고발 관련 업무 소홀

○ **(조치사항)** 구제명령 확정 사업장에 대한 고발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**교육 실시** 후 보고